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31
------------	------

발의연월일 : 2016. 12. 30.

발 의 자 : 민홍철 · 손금주 · 정인화
이 훈 · 황주홍 · 서형수
안규백 · 이개호 · 주승용
설 훈 · 노웅래 · 고용진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의의가 있음.

그러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 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계 · 통합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며,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 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 나.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 함(안 제1조 등).
- 다. 적용 대상을 신도시 외에 기성시가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 고 사업시행자에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 술의 해외수출 지원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의4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 통합 촉진을 위한 근 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5 신설).
- 마. 스마트도시 추진체계로서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고 협회의 업무, 조직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 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

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근거 및 세제지원의 근거를 신설
함(안 제24조의4,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사.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도 및 인증의 취소, 인증의 표시 제도를
규정함(안 제31조 신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건설 및 관리”를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란”을 ““스마트도시”란”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유비쿼터스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의”를 “스마트도시의”로, “건설 및 관리 등”을 “조성 및 관리·운영 등”으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스마트도시건설등”으로,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스마트도시건설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안”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각각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스마트도시건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구축”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각각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각각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각각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를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권자”를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각각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스마트도시건설”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각각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를 “스마트도시서비스의”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각각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제3장의2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21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를 “스마트도시의”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을 각각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을 “스마트도시 추진체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스마트도시”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를 “스마트도시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스마트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협의체”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등”으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각각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3(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의3 다음에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삽입한다.

제6장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등”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향상을”을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로, “추진할”을 “추진·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

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양성”을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유비쿼터스시범도시”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등”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로, “유비쿼터스시범도시”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시범도시”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 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유상 개발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 중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지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	<u>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u>
<p>제1조(목적) 이 법은 <u>유비쿼터스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u>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유비쿼터스도시</u>”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u>유비쿼터스도시기술</u>을 활용하여 건설된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란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 	<p>제1조(목적) ----- <u>스마트도시-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u>-----</p>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스마트도시</u>”란----- ----- <u>스마트도시기술</u>----- -----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u>스마트도시서비스</u>----- 2. -- <u>스마트도시서비스</u>-----<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 설>

4.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이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생 략)

6.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 7. (생 략)

<신 설>

5. (현행과 같음)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계획--스마트도시서비스--스마트도시기반시설--
-----.

제3조(적용 대상) ①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1. ~ 7.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p><u><신 설></u></p> <p>제2장 <u>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u></p> <p>제4조(<u>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u>(이하 “<u>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u>”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u>(이하 “<u>종합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u>2. <u>유비쿼터스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3. <u>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u>	<p>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2장 <u>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u></p> <p>제4조(<u>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u>) ① ----- 스마트도시의-----조성 및 관리·운영 등-----스마트도시건설등----- -----스마트도시종합계획-----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스마트도시</u>----- ----- -----2. <u>스마트도시</u>----- -----3. <u>스마트도시</u>----- -----
---	--

4. <u>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u>	4. <u>스마트도시건설등</u> ----- --
5.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u>스마트도시건설사업</u>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 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7.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
8. <u>유비쿼터스도시기술</u> 의 기준에 관한 사항	8. <u>스마트도시기술</u> -----
9. 개인정보 보호와 <u>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u> 보호에 관한 사항	9. -----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10. <u>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10. <u>스마트도시건설등</u> ----- ----
11. 그 밖에 <u>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u>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 <u>스마트도시건설등</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u>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u> 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	③ ----- ----- ---- <u>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u> -----

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자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광활 구역에 있

스마트도시서비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
② -----

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
여야 한다.

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
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
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

1. (현행과 같음)
 2. ----- 스마트도시건설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5. (현행과 같음)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종합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마트도시계획-----

④ -----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계획-----

⑤ 스마트도시계획-----

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
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
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
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
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
계획) ① -----
-----스마트

<p><u>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8. <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u></p> <p>9. <u>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u></p> <p>10. 그 밖에 <u>유비쿼터스도시건설</u>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 ⑤ (생략)</p> <p>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p>	<p><u>도시건설사업</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u>- -----</p> <p>8. <u>스마트도시서비스</u>----- -----</p> <p>9. <u>스마트도시기술</u>-----</p> <p>10. -----<u>스마트도시건설</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준공검사) ① ----- ----- -----<u>스마트도시건설사업</u>--- ----- ----- ----- -----.</p> <p>② ----- -----<u>스마트도시건설사업</u>--- ----- -----</p>
--	---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 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 ----- ----- ----- ----- ----- -----.
(4) (생략)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 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 ----- ----- ----- -----.
(2) · (3) (생략) 제19조(<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 의 관리·운영 등) ①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의 관리·운영 등) ①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 -----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p> <p>②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청은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p> <p>③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p>		<p>----- -----.</p> <p>②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 ----- ----- ----- ----- -----.</p> <p>③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 ----- -----.</p> <p>④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 -----.</p> <p>⑤ -----</p>
---	--	--

<p>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운영 계획을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의2 <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u></p> <p>제19조의2(<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청은 <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제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u>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p>	<p>-----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 ⑥ ----- -----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 ----- -----. 제3장의2 <u>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u> 제19조의2(<u>스마트도시서비스</u>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u>스마트도시서비스</u>----- ----- ----- ----- -----. ----- ----- ----- -----. ②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p>
---	--

을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의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

②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서비스-----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1. <u>스마트도시서비스</u> ----- ----- ----
2. <u>유비쿼터스도시</u>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2. <u>스마트도시</u> ----- -----
3. <u>유비쿼터스도시기술</u> 의 연구·개발	3. <u>스마트도시기술</u> -----
4. <u>유비쿼터스도시</u> 의 표준화 지원	4. <u>스마트도시</u> -----
5. <u>유비쿼터스도시</u>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u>스마트도시</u> ----- -----
<신 설>	6. <u>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u>
<신 설>	<u>기술의 해외수출 지원</u>
<신 설>	7. <u>스마트도시 인증 지원</u>
<신 설>	8. <u>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u>
<신 설>	9. <u>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u>
	<u>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u>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u>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스마트도시-----

<p>제5장 <u>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u> 등 제23조(<u>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u>) ①</p> <p><u>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u>에 관련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u>유비쿼터스도시위원 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국가가 시행하는 <u>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u>에 관한 사항 3. (생략) 4. <u>유비쿼터스도시</u> 활성화를 위 한 정부의 지원사항 5. <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 활성 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 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6. <u>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u>과 관 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7.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 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 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p>제5장 <u>스마트도시</u> 추진체계 제23조(<u>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u>) ①</p> <p><u>스마트도시</u>----- ----- ----- <u>스마트도시위원회</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스마트도시 건설사업</u>----- 3. (현행과 같음) 4. <u>스마트도시</u>----- ----- 5. <u>스마트도시서비스</u>----- ----- ----- 6. <u>스마트도시와</u>-----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p>1. <u>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u></p> <p>2. (생략)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위원회</u>를 둘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24조(<u>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u>) ①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u>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략)2.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u>에 관한 사항3. <u>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u>4. 그 밖에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p>1. <u>스마트도시</u>----- ----- -----</p> <p>2. (현행과 같음) ④ ----- ----- -----<u>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협의체</u>. ⑤ (현행과 같음)</p> <p>제24조(<u>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u>) ① <u>스마트도시건설사업등</u>----- ----- ----- ----- <u>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현행과 같음)2.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3. <u>스마트도시기반시설</u>----- ----- -----4. -----<u>스마트도시건설사업</u>-----
--	---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 대상 지역의 주민 6. <u>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 관련 전문가 <p>③ (생략)</p> <p><u><신설></u></p>	<p>-----</p> <p>② -----</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u>스마트도시건설사업</u>----- 6. <u>스마트도시서비스</u>-----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3(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시행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신 설>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제24조의4(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p><u>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u></p> <p><u>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제25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u>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제26조(연구·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유비쿼터스도시기술</u>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추진할</u> 수 있다.</p> <p>1. <u>유비쿼터스도시기술</u>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p> <p>제25조(보조 또는 융자) ① ----- ----- <u>스마트도시건설사업등</u> ----- ----- -----. ② ----- ----- -----<u>스마트도시</u> <u>건설사업등</u> ----- ----- -----. 제26조(연구·개발 등) ----- -----<u>스마트도시기술</u> -----<u>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u> -----<u>추진·지원</u> <u>할</u> 1. <u>스마트도시기술</u> -----</p>
--	--

<p>2. (생략)</p> <p>3. <u>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 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u></p> <p>4. 중소기업 등의 <u>유비쿼터스도시기술 경쟁력 강화</u></p> <p>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유비쿼터스도시건설</u>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u>스마트도시기술</u>-----</p> <p>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u>스마트도시</u> <u>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u> <u>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u> <u>산업의 지원</u>----- ----- ----- -----.</p>
<p>1. <u>유비쿼터스도시 전문인력의 양성</u></p> <p>2. <u>유비쿼터스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u></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유비쿼터스도시</u>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28조(<u>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촉진</u></p>	<p>1. <u>스마트도시</u>-----<u>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u></p> <p>2. <u>스마트도시</u>----- ----- ② ----- ----- -----<u>스마트도시</u>----- ----- -----.</p> <p>제28조(<u>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u>) ① -----<u>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u></p>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비쿼터스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비쿼터스시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②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제2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유상 개발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

<신 설>

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하거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
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
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인
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

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